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50
----------	-------

발의연월일 : 2026. 5. 22.

발 의 자 : 전진속 · 이수진 · 김정호
장철민 · 손 술 · 김문수
서미화 · 전종덕 · 문대림
김현정 · 이광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이를 조롱·희화화하는 행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5·18민주화운동은 국가권력의 반민주적·반인권적 폭력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역사이다. 그 과정에서 사망·행방불명·상해·구금·고문·가혹행위 등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은 국가폭력의 피해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언자이다. 그럼에도 5·18민주화운동을 부인·왜곡하거나 피해자와 유족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해 사실을 조롱·모욕·희화화하는 행위가 반복되

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에게 피해를 반복시키는 2차 가해이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와 모욕적 표현, 유족에 대한 조롱과 비방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며,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다.

최근 국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개적 방법의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의결한 바 있다. 역사적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고, 피해 사실의 부정과 왜곡으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현행 제8조를 정비하고, 나아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피해 사실 부인·왜곡, 조롱·모욕·희화화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처벌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 예방 교육·홍보, 모니터링, 법률·심리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8조 등).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를“(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하거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의 금지) ① 누구든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5·18민

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

3.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조롱·모욕하거나 희화화하여 그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

4.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권력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상해·구금·고문·가혹행위, 그 밖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유족”이란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예술·학문·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가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비방하거나 조롱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3(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2. 전시물, 공연물, 영상물, 음반·음향물, 광고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3. 강연, 연설, 토론회, 간담회, 집회, 시위, 기자회견, 그 밖에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방법

4. 그 밖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하는 방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3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게시·전송·공유하는 방법

2. 광고물, 전시물, 공연물, 영상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공개하는 방법

3. 집회, 시위, 강연, 기자회견, 그 밖에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행위의 경우에는 유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의4(2차 가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예방 교육 및 홍보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피해 사실 부인·왜곡, 조롱·모욕·희화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지원

3.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법률상담, 심리상담, 의료지원, 권리구제 지원

4. 2차 가해로 인한 피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5. 그 밖에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와 존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사업의 내용과 방법,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신설></p>	<p>제8조(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조롱하거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의 금지) ① 누구든지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p>

2.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

3.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조롱·모욕하거나 희화화하여 그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는 행위

4.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② 제1항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권력의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로 인하여 사망·행방불명·상해·구금·고문·가혹행위, 그 밖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유족”이란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예술·학문·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가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비방하거나 조롱할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3(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2. 전시물, 공연물, 영상물, 음반·음향물, 광고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

3. 강연, 연설, 토론회, 간담회, 집회, 시위, 기자회견, 그 밖에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방법

4. 그 밖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공개하는 방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8조의2제1항제3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게시·전송·공유하는 방법

2. 광고물, 전시물, 공연물, 영상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공개하는 방법

3. 집회, 시위, 강연, 기자회견, 그 밖에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시한 의사

<신 설>

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행위의 경우에는 유족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의4(2차 가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예방 교육 및 홍보
2.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피해 사실 부인·왜곡, 조롱·모욕·희화화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 지원

3.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법률 상담, 심리상담, 의료지원, 권리구제 지원

4. 2차 가해로 인한 피해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5. 그 밖에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와 존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사업의 내용과 방법,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